

##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의안 번호	99
----------	----

제안년월일 : 1996. 11. 25.

발 의 자 : 김충웅의원의 6인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우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민과 우리구의회 의사가 구 정전반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위해 영등포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함.

### 2. 주요골자

#### 1. 행정사무감사

- 가. 기간 : '96. 11. 26. ~ 12. 2.(7일간)
- 나. 장소 : '96 행정사무감사장(제1, 2, 3 감사장)
- 다. 출석대상 : '96 영등포구 행정사무 감사계획 참조

#### 2. 구정질문 및 답변

- 가. 기간 : '96. 12. 3. ~ 12. 5.(3일간)
- 나. 장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 다. 출석대상 :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생활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 각동장

### 3. 참고사항

- 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 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